

##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 제 24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7인	0인

1. 일시 : 2013년 2월 18일(월) 10 : 00 (회의소집통보일 : 2013년 2월 8일)
2. 장소 :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본부동 3층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이사
    - 이사 : 고제철, 최승한, 주경석, 최영선, 고팽수, 김옥현, 고경주
4. 안건
  - (1) 의안 제 53호 정관 변경(안)
  - (2) 의안 제 54호 대학 겸임교원 재(신규)임용 및 초빙교원 재(신규)임용(안)
  - (3) 의안 제 55호 유치원 기간제교원 임용(안)
  - (4) 의안 제 56호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2회계연도 학교비 추경예산 편성(안)
  - (5) 의안 제 57호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3회계연도 학교비 예산 편성(안)
  - (6) 의안 제 58호 2013년도 보수규정 개정(안)
5. 의결사항
  - (1) 정관의 변경 (부분 인가, 부분 보고 → 전체 보고) 부분, 대학의 전임강사를 삭제하고, 휴직의 사유중 육아휴직 부분에서 만 5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대학의 하부조직을 : 교학처 · 기획처 · 입학처 → 기획처 · 교무처 · 입학홍보처 · 학생복지상담처로 변경한다.
  - (2) 겸임교원(17명) : 【재임용(2명), 신규(15명)】 , 초빙교원(8명) : 【재임용(3명), 신규(2명)】 을 2013. 3. 1일자로 임용하다.
  - (3) 유치원 기간제교원 백경옥, 노을, 백경은을 2013. 3. 1일자로 임용하다.
  - (4) 2012학년도 법인 및 대학, 유치원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다.
    - 법인(일반회계) : 2,007,443천원에서 356,024천원이 증된 2,363,467천원
    - 대 학 : 26,575,452천원에서 2,586,833천원이 증된 29,162,285천원
    - 유치원 : 256,910천원에서 35,886천원이 증된 292,796천원
  - (5) 2013학년도 법인 및 대학, 유치원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다.
    - 법인(일반회계) : 2,363,467천원에서 1,031,788천원이 증된 3,395,255천원
    - (수익사업회계) : 4,069,354천원에서 3,507,822천원이 감된 561,532천원
    - 대 학 : 29,162,285천원에서 13,933,994천원이 감된 15,228,291천원

- 유치원 : 292,796천원에서 21,205천원이 증된 314,001천원

- (6) 법인 및 산하 학교의 보수를 2013년도 공무원보수규정(총보수대비 2.8% 인상)을 적용, ~~2011~~ ~~2012~~ ~~2013~~ ~~2014~~ 범위안에서 수당을 조정 할 수 있다)

## 6. 회의내용

이사장 고제철 :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 24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 23회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이사장 고제철 : 제 23회 이사회 회의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으시다 하셨으므로 제 23회 이사회 회의록 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24회 이사회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 3. 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신 대학의 상담 심리학과 나영길 교수님, 식품영양학과 유맹자 부교수님, 금융세무경영학과 최인태 부교수님, 유아교육과 허경현 부교수님, 간호학과 김경란 조교수님께 우리 대학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 53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다.)

이사 최승한 :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대학의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법인 정관 중 일부를 변경하여 현실적인 학교운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부분 인가, 부분 보고 → 전체 보고) 부분, 대학의 전임강사를 삭제하고, 휴직의 사유중 육아휴직 부분에서 만 5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자녀 → 만 8세 이하의 자녀(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대학의 하부조직을 : 교학처·기획처·입학처 → 기획처·교무처·입학홍보처·학생복지상담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주경석 : 최승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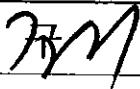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 54호 대학 겸임교원 재(신규)임용 및 초빙교원 재(신규)임용(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정관】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span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span> 
<p>제5조(정관의 변경)</p> <p>이 법인의 정관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정관의 변경)</p> <p>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7조(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p> <p>①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p> <p>1. 근무기간</p> <p>가. 교 수 : 6년 이내</p> <p>나. 부 교 수 : 6년 이내</p> <p>다. 조 교 수 : 4년 이내</p> <p>라. 전임강사 : 2년 이내</p> <p>2.~6. &lt;생략&gt;</p> <p>② &lt;생략&gt;</p>	<p>제47조(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p> <p>① -----</p> <p>1. 근무기간</p> <p>가. &lt;좌동&gt;</p> <p>나. &lt;좌동&gt;</p> <p>다. &lt;좌동&gt;</p> <p>라. &lt;삭제&gt;</p> <p>2.~6. &lt;좌동&gt;</p> <p>② &lt;좌동&gt;</p>
<p>제49조(기간제 교원의 재임용)</p> <p>① 2012년 1월 1일 현재 송원대학 (전문대학)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재직 한 교원으로서 송원대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3. &lt;생략&gt;</p> <p>4. 전임강사 : 2년 이내</p> <p>④~⑦ &lt;생략&gt;</p>	<p>제49조(기간제 교원의 재임용)</p> <p>① -----</p> <p>1.~3. &lt;좌동&gt;</p> <p>4. &lt;삭제&gt;</p> <p>④~⑦ &lt;좌동&gt;</p>
<p>제52조(휴직의 사유)</p> <p>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p>	<p>제52조(휴직의 사유)</p> <p>-----</p>

구	신
<p>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del>당해 교원의 임면권자</del> 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del>휴직</del> 을 명하여야 한다.</p> <p>1.~6. &lt;생략&gt;</p> <p>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8.~10. &lt;생략&gt;</p>	<p><del>2011</del></p> <p><del>2012</del></p> <p>1.~6. &lt;좌동&gt;</p> <p>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p> <p>8.~10. &lt;좌동&gt;</p>
<p>제93조(하부조직)</p> <p>① 대학교에 교학처·기획처·입학처·사무 처를 둔다.</p> <p>②~③ &lt;생략&gt;</p>	<p>제93조(하부조직)</p> <p>① ----- 기획처·교무처·입학홍보처· 학생복지상담처 -----.</p> <p>②~③ &lt;좌동&gt;</p>
<p>&lt;신설&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p> <p>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p>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겸임교원 재임용(안)】**

연번	소속학과	직명	성명	생년월일	학위소지	담당과목	시수	현근무처	임용기간	비고
1	치위생학과	겸임교원	박석인	1963. 01. 15	치의학박사	구강내과	3	미르치과병원	2013. 3. 1~ 2014. 2. 28	1년
2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원	민순옥	1964. 01. 23	교육학박사	사회보장론	3	아동문학창의 연구소	2013. 3. 1~ 2014. 2. 28	1년

**【겸임교원 신규임용(안)】**

연번	소속학과	직명	성명	생년월일	학위 소지	담당과목	시수	현근무처	임용기간	비고
1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원	한수연	1964. 02. 13	아동학 석사	심리치료	6	(사)청소년가족 복지상담협회	2013. 3. 1~ 2014. 2. 28	1년
2	철도운수 경영학과	겸임교원	박조영	1981. 11. 16	공업 전문학사	철도운전이론	2	한국철도공사	2013. 3. 1~ 2014. 2. 28	1년
3	철도운수 경영학과	겸임교원	조광희	1960. 04. 02	경영학 석사	철도운전 비상조치	2	광주도시 철도공사	2013. 3. 1~ 2014. 2. 28	1년
4	전기전자공학과	겸임교원	서정철	1949. 02. 18	전기공학 석사	전기전자 기초실습	6	(주)종합시스템	2013. 3. 1~ 2014. 2. 28	1년
5	기계자동차 공학과	겸임교원	손재용	1972. 05. 27	공업 전문학사	전자제어설습	6	차를좋아하는 사람들	2013. 3. 1~ 2014. 2. 28	1년
6	기계자동차 공학과	겸임교원	임 훈	1975. 05. 24	공업 전문학사	전산기계 요소설계	3	씨엔건설(주)	2013. 3. 1~ 2014. 2. 28	1년
7	뷰티예술학과	겸임교원	임진주	1975. 01. 20	보건학 석사	피부과학	4	임체연 뷰티테라피	2013. 3. 1~ 2014. 2. 28	1년
8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원	김동현	1968. 03. 19	체육학 석사	육상	2	일스포츠	2013. 3. 1~ 2014. 2. 28	1년
9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원	김태훈	1975. 02. 14	무용학 석사	댄스스포츠	2	김태훈 댄스클럽	2013. 3. 1~ 2014. 2. 28	1년
10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원	정관일	1964. 03. 20	교육학 석사	육상	2	헬스라인	2013. 3. 1~ 2014. 2. 28	1년
11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원	김찬우	1977. 01. 15	체육학 박사	한국체육사 태권도	5	태동태권도 체육관	2013. 3. 1~ 2014. 2. 28	1년
12	언어재활 심리학과	겸임교원	선국진	1960. 07. 29	행정학 박사	대화의기법 자원봉사론 등	10	(사)실로암 사람들	2013. 3. 1~ 2014. 2. 28	1년
13	공간환경시스템 공학과	겸임교원	이재수	1960. 12. 01	경영 학사	건설재료학 및 실험	6	한국건설산업 시험연구원	2013. 3. 1~ 2014. 2. 28	1년
14	공간환경시스템 공학과	겸임교원	김철환	1965. 02. 18	공학사	토목적산기초	3	스테이텍 엔지ニア링	2013. 3. 1~ 2014. 2. 28	1년
15	공간환경시스템 공학과	겸임교원	최선민	1972. 08. 15	토목공학 박사	철근콘크리트 토목설계기초	5	(주)BM연구소	2013. 3. 1~ 2014. 2. 28	1년

**【초빙교원 재임용(안)】**

연번	소속학과	직명	성명	생년월일	학위소지	담당과목	시수	보수연액	임용기간	비고
1	체활 건강학과	초빙교원	이성진	1964. 04. 29	한의학박사	진단처방학 작업재활설습	12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2	실용 예술학과	초빙교원	백경우	1979. 08. 26	무용학사	재즈댄스 댄스창작발	12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3	사회 체육학과	초빙교원	성현출	1963. 05. 13	인학박사	스포츠행정론	3	2,7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 【초빙교원 신규임용(안)】

연번	소속학과	직명	성명	생년월일	학위소지	담당과목	시수	보수연액	임용기간	비고
1	상담 심리학과	초빙교원	나영길	1950. 03. 03	경영학 박사	발달심리학 청소년심리	9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2	유아 교육과	초빙교원	허경현	1951. 08. 24	교육학 석사	언어지도 부모교육	9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3	금융세무 경영학과	초빙교원	최인태	1952. 09. 19	경영학 박사	조리과학 한국조리	9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4	식품 영양학과	초빙교원	유맹자	1954. 07. 07	식품공학 박사	경제학원론 금융학개론	9	24,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5	간호학과	초빙교원	김세영	1967. 02. 15	간호학 박사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등	14	15,000,000원	2013. 3. 1 ~ 2014. 2. 28	1년

이 사 최영선 : 대학 겸임교원 재(신규)임용 및 초빙교원 재(신규)임용(안)을 겸 토한 바 학교수업과 현장실무 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점이 인정되며, 풍부한 현장 실무 경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률을 높여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초빙교원 나영길·허경현·최인태·유맹자 교수님은 우리 대학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이에 정년(만 65세)까지 초빙교원으로 임용(연구실 등 조건 : 전임교원과 유사, 보수는 별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옥현 : 최영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대학 겸임교원 재(신규)임용 및 초빙교원 재(신규)임용(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 55호 유치원 기간제교원 임용(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유치원 기간제교원 임용(안)

연번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소지 자격증	임용 년월일	임용기간	보수월액	비고
1	송원유치원	기간제교사	백경우	1987. 05. 06	(유)2정	2013. 3. 1	2013. 3. 1 ~ 2014. 2. 28	1,250,000원	이미옥후임
2	송원유치원	기간제교사	노 을	1991. 12. 30	(유)2정	2013. 3. 1	2013. 3. 1 ~ 2014. 2. 28	1,250,000원	김혜진후임
3	송원유치원	기간제교사	백경은	1991. 10. 02	(유)2정	2013. 3. 1	2013. 3. 1 ~ 2014. 2. 28	1,250,000원	정소진후임

이 사 고경주 : 유치원 기간제교원 임용(안)을 살펴본 결과, 결원보충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주경석 : 고경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유치원 기간제교원 임용(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 56호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2회계연도 학교비 추경예산 편성(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2회계연도 학교비 추경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학교명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A-B)	비고
유치원	292,796	256,910	35,886	제 1회
대 학	29,162,285	26,575,452	2,586,833	제 1회
법인(일반회계)	2,363,467	2,007,443	356,024	제 1회
계	31,818,548	28,839,805	2,978,743	

이 사 주경석 : 대학(유치원 포함) 추경예산서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김옥현 : 주경석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2 회계연도 학교비 추경예산 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 57호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3회계연도 학교비 예산 편성(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제안설명을 하다.)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3회계연도 학교비 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학교명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증감(A-B)	비고
유치원	314,001	292,796	21,205	
대 학	15,228,291	29,162,285	△13,933,994	
법인	일반회계	3,395,255	2,363,467	1,031,788
	수의사업회계	561,532	4,069,354	△3,507,822
계	19,499,079	35,887,902	△16,388,823	

이 사 김옥현 :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예산서를 면밀히 살펴보니 관계규정

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인 및 대학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숙지하시고 추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예산 지침을 숙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최승한 : 김옥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법인 및 대학(유치원 포함) 2013 회계연도 학교비 예산 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 37호 2012년도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상수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다.)

이 사 고광수 : 지금까지 우리 법인 및 산하 각급학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왔습니다. 2013년에는 총보수대비 2.8%를 인상하여 보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2013년 1월 1일자로 적용, 확정하고 대학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 최승한 : 고광수 이사의 동의에 재청입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셨음으로 2013년도 보수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 하실 이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옥현 :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이사장, 최승한·고경주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이 사 주경석 : 김옥현 이사의 추천에 동의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찬성입니다."하다)

이사장 고제철 :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이사로 본인을 포함하여 최승한·고경주 이사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법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없습니다.")

이사장 고제철 :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24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일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 전원 회의록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2  
11

名  
記  
號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 고제철 (서명)

고제철

이사 최승한 (서명)

최승한

이사 주경석 (서명)

주경석

이사 최영선 (서명)

최영선

이사 고향수 (서명)

고광수

이사 김옥현 (서명)

김옥현

이사 고경주 (서명)

고경주